

# 동아시아 교원양성 국제컨소시엄 규약

## 제 1 장 총칙

### (명칭)

제 1 조 본 조직은 동아시아 교원양성 국제 컨소시엄(International Consortium for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East Asia. 이하, 「국제 컨소시엄」 ICUE) 이라고 한다.

### (조직)

#### 제 2 조

국제 컨소시엄은 본 컨소시엄에 참가할 의사를 가진 동아시아 지역의 교원 양성계 대학·학부를 회원교로 구성한다.

2 국제 컨소시엄에 입회하고자 하는 대학·학부는, 별지 「입회 신청서」를 각국 사무국(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나라와 지역은 중국·한국·일본 삼개국 사무국)에 제출해서 국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입회가 인정된다.

3 회원교는 별지 「탈퇴계」를 각국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본 컨소시엄을 탈퇴할 수 있다. 또한 탈퇴교가 있을 경우, 그 내용을 각국의 사무국은 모든 회원교에 통지해야 한다

### (사무국 등)

제 3 조 국제 컨소시엄에 관한 사무는 각국의 동아시아 교원양성 국내 컨소시엄(이하, 「국내 컨소시엄」) 사무국이 겸무한다. 또한 중국·한국·일본의 국제 및 국내 컨소시엄 사무국은 이하의 대학에 상설하기로 한다.

중국 : 북경사범대학, 한국 : 공주대학교, 일본 : 도쿄가쿠게이대학

## 제 2 장 목적 및 사업

### (목적)

제 4 조 국제 컨소시엄은 동아시아 지역의 교원 양성계 대학·학부가 연대해서 상호의 국제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즉,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학 간의 학생·교직원의 유학 및 연수 촉진, 학교 교육과 교원 양성 문제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의 추진을 중심으로 해서, 이외에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(사업)

제 5 조 국제 컨소시엄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.

(1) 동아시아 지역의 교원양성대학·학부 간의 유학·연수 사업의 추진

- (2) 동아시아 지역의 교원양성대학·학부 간의 국제공동연구의 촉진
- (3) 동아시아 지역의 교원양성대학·학부 간에 있어서의 교직원 교류의 촉진
- (4) 동아시아 교원양성 국제심포지엄, 국제포럼의 개최
- (5) 동아시아 지역의 교원양성대학·학부 간의 교육연구 정보 등의 교환
- (6) 그 외, 본 컨소시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### 제 3 장 국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

(국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)

제 6 조 국제 컨소시엄 사업 실시와 관련한 사항, 규약의 개정과 폐지, 그 외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국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를 둔다.

2 국제 컨소시엄 운영 위원회는 각국 2 개교(각국의 국내 컨소시엄 책임 간사교)의 대표로 구성된다. 단 국제 컨소시엄 운영 위원회는 이하의 대학으로 구성된다.

중국 : 북경사범대학, 화동사범대학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국 : 공주대학교, 서울교육대학교

일본 : 동경학예대학, 오사카교육대학

3 국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의장은 매년 윤번제로 해서, 당번국의 사무국을 둔 대학이 당해 연도의 의장을 맡는다.

4 국제 컨소시엄 운영 위원회는 국제 컨소시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 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.

5 국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의장은 적당한 때에 다른 대표교의 양해를 얻어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, 각국의 국내 컨소시엄은 필요할 경우 국제 컨소시엄 운영 위원회 의장에 대해 운영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

(운영 위원회의 임무)

제 7 조 국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, 별도로 각각의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그 실제적 운용을 도모한다.

- (1) 국제 컨소시엄 간의 유학 제도의 정비·운용에 관한 사항
- (2) 국제 컨소시엄 간의 연수제도의 정비·운용에 관한 사항
- (3) 국제 컨소시엄 간의 연구자 상호 파견 제도의 정비·운용에 관한 사항
- (4) 국제 컨소시엄에 있어서의 공동 연구 조직의 정비·운용에 관한 사항
- (5) 국제 컨소시엄 참가 대학 간의 복수학위제도의 정비·운용에 관한 사항
- (6) 국제 컨소시엄에 있어서의 교직원 어학 연수제도의 정비·운용에 관한 사항
- (7) 동아시아 교원 양성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
- (8) 국제 컨소시엄 규약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- (9) 국제 컨소시엄에의 입회에 관한 사항

(10) 그 외, 국제 컨소시엄의 목적에 부수되는 중요 사항

#### 제 4 장 사업 경비

##### (사업 참가 경비)

제 8 조 국제 컨소시엄 사업 참가 경비는, 여비·숙박비 등을 포함해 각 참가교가 부담한다.

##### (사업 준비 경비)

2 국제 컨소시엄 사업 준비 경비는, 각종 사업의 준비 사무 경비 등을 포함해 각국의 국내 컨소시엄 책임 간사교가 중심이 되어 확보한다.

#### 부칙

1 이 규약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2 이 규약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